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2565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정치원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

변론 종결2024. 11. 21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9,563,5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89,563,5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135,037,895원과 그 중 원금인 126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2. 26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15835), C은 부친인 망 D이 사망하자 2020. 11. 26. 채무초과 상태에서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자신의 상속분인 2/7 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한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은 2023. 11. 13. 소외 E에게 매도된 사실이 인정된다.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/7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E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으로 함이 상당한데, 위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세가 350,0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

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, 위 상속분할협의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1, 2,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, 위 1, 2순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,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6,527,5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결국 피고가 반환할 금액은 앞서 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인 89,563,558원 [= (350,000,000원 - 36,527,544원) x 2/7, 원 미만 버림]이 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,563,5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조중래

별지